2021학년도 미원초등학교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Ⅰ. 배경 및 근거

1. 추진 배경

가.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의 다양화 및 내실화 추진

나.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2. 추진 근거

가.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8~2022)

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1)

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8.)

Ⅱ. 추진 방향

목 표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

추진 방향

❖ **자기 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학생의 흥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예시) 안내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Ⅲ. 세부 계획

1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6317호. 2019.8.6.공포)

○ 구성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으로 함
- 위촉직 위원은 학생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할 수 있음

○ 기능

-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
-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봉사활동 인정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
-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2021학년도 미원초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학교 봉사 활동 추진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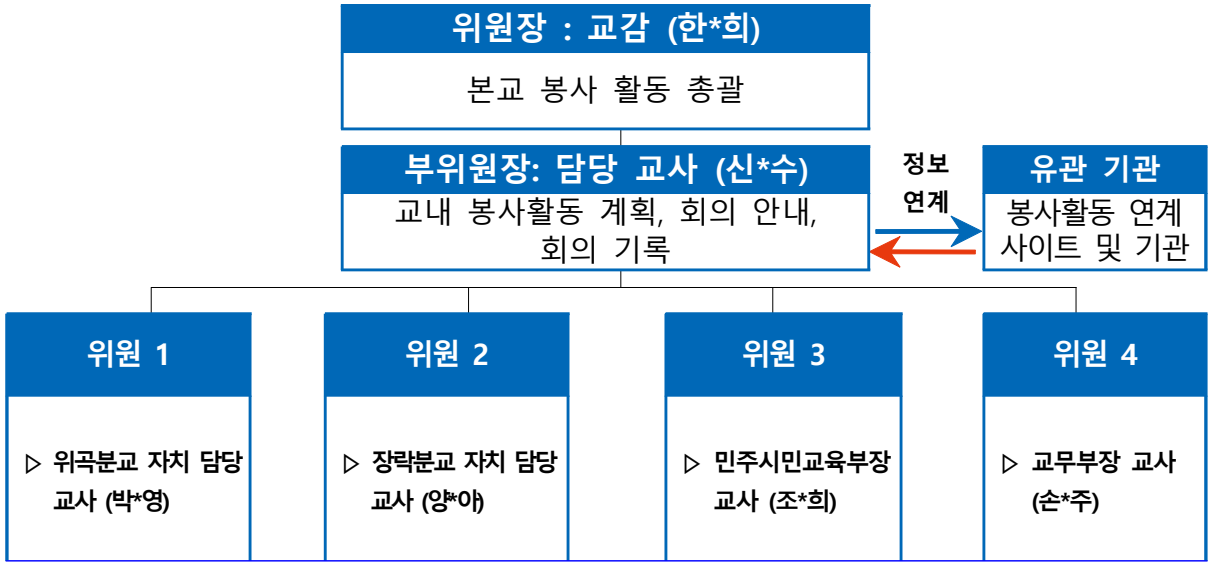

2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가.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운영

○ 목적

- 봉사활동의 기회를 함께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체험한다.
- 실과교과 뜨개질 관련 활동을 봉사활동에 적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인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에 따라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과 병행할 수 있음.

○ 대상

- 본교 5-6학년 재학생

○ 활동 기간

운영 순서	기한
1. 모자뜨기 키트 구입	11월 셋째주(~11월 19일)
2. 학급별 키트 배부	11월 넷째주(~11월 26일)
3. 학급별 활동 – 완성된 모자 세탁 완료, 2하나 교실로 전달	12월 2일 ~ 12월 17일
4. 완성된 모자 택배 배송	12월 17일(금)

○ 활동 기간

학급	관련 교과	관련단원	관련 내용	일시	장소	비고
5하나	실과	5. 나의 자립적인 의생활	스스로 하는 옷 관리	2021.12.2.(목) 3-4교시	5-하나 교실	'신생아살리기 캠페인' 홈페이지 (E-Learning) 활용
5두리				2021.12.2.(목) 3-4교시	5-두리 교실	
6하나	실과	5. 창의적인 의생활의 실천	대바늘 뜨기로 모자 뜨기	2021.12.2.(목) 3-4교시	6-하나 교실	
6두리				2021.12.2.(목) 3-4교시	6-두리 교실	

○ 소요 예산

- 모자뜨기 스쿨키트(5만원, 5개입)*20개 = 1,000,000원(학부모회운영 예산)

나. 학급별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 본교

학급 명	일자 (반 번호) *괄호 미기재시: 반 전체	내용(차시)	총 차시 합계
1학년 하나반	07.22. / 12.23.	환경보호활동(2)	2차시
1학년 두리반	07.22. / 12.23.	환경보호활동(2)	2차시
2학년 하나반	07.24. / 12.29.	환경보호활동(2)	2차시
2학년 두리반	07.23.	환경보호활동(1)	1차시
3학년 하나반	5.25. / 12.27.	환경보호활동(2)	2차시

3학년 두리반	5.25. / 12.27.	환경보호활동(2)	2차시
4학년 하나반	7.22. / 12.29.	환경보호활동(1) 환경보호활동(1)	2차시
4학년 두리반	7.15.	환경보호활동(1)	1차시
5학년 하나반	6.28. / 7.23. /10.4. / 12.29.	환경보호활동(4)	4차시
5학년 두리반	6.28. / 7.23. /10.4. / 12.29.	환경보호활동(4)	4차시
6학년 하나반	05.06. / 09.23.	학교 환경정리(2)	2차시
6학년 두리반	05.06. / 09.23.	학교 환경정리(2)	2차시

○ 위곡분교

학급 명	일자 (반 번호) *괄호 미기재시: 반 전체	내용(차시)	총 차시 합계
1학년 꽃망울반	04.06. / 10.29	환경보호활동(4)	4차시
2,3학년 꽃송이반	04.06. /05.14. /10.29. / 12.03	환경보호활동(4)	4차시
5학년 꽃피움	04.06. /04.07. /06.02. / 06.09./ 11.24. /12.20.	환경보호활동(6)	6차시
4,6학년 꽃씨랑	04.06.	환경보호활동(2)	2차시

○ 장락분교

학급 명	일자 (반 번호) *괄호 미기재시: 반 전체	내용(차시)	총 차시 합계
1학년	학급 없음		
2학년 비비추	03.05. / 10.18.	환경보호활동(2)	2차시
3학년 둥글레	3.2.	환경보호활동(1)	1차시
4학년 비비추	03.05. /10.18.	환경보호활동(2)	2차시
5학년 둥글레	3.2.	환경보호활동(1)	1차시
6학년 원추리	3.2. / 8.20.	환경보호활동(1) 환경보호활동(1)	2차시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가.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일・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	×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나.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경기도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1365나눔포털, VMS, DOVOL 등 연계사이트에 등록된 기관(단체)

※ 국가인정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취지와 우리 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지침에 어긋난 활동은 인정 불가하며 학교의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내용을 엄격하게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
※ VMS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기관 검색 가능

○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다. 활동별 시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필요 시 원격 실시 가능)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교육 및 회의시간은 불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의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함.

○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내빈 안내, 주차 관리,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 정부나 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혹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 기부)** 단순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불가

- (물품 등의 제작기부)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간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봉사시간 인정

※ 단, 감염병 확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신청한 **개인계획에 의한 제작기부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봉사시간 인정

○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 신청한 개인봉사활동의 경우만 적용**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①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제출
② 봉사활동 과정 사진(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③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 확인

※ 계획서 확인 시 학생 안전 및 무보수·자발·공익·비영리·비정파·비종파성 충족 유무 확인 후 승인

○ **(헌혈)**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연간 3회 이내)

- 1일 8시간 이내 원칙에 포함되지 않음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직접적이며 실천적인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전(사후) 학부모 동의서 또는 학생 소감문**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헌혈 봉사 활동 동기, 목적 등 소감 기록

○ **(선플 달기)** '선플달기' 작성 최대 1시간 봉사활동 인정(선플달기운동본부 http://sunfull.or.kr)

- 초등학생 4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중복 인정 불가)** 봉사관련 자율동아리 등 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실적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예) 자원봉사동아리(자율)의 주말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으로만 인정

※ 학기 초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계획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을 **학기 말에 봉사활동 실적으로 변경하여 기재 불가**

○ **(인정 불가)** 학생의 징계, 학폭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그 외 봉사활동 인정 기준)** [참고자료 2] 참조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결재하여 인정

○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봉사 의미,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연간 2시간, 필요 시 원격 실시 가능)

4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 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학급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표, 글쓰기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지속적인 격려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 평가 기준

기 준	평가 관점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5 기대 효과

○ 학생의 진로와 흥미를 연계한 봉사활동 운영 가능

○ 학급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하여 1년간 장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운영 가능

○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봉사습관 내재화

참고자료 1 2015 개정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 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 친구돕기활동 -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 환경정화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참고자료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및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임 혹은 담당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apos, &gt(폰트오류,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에 준해 계획서 제출은 생략

3. 봉사활동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다른 영역과의 시간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다른 영역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동아리활동으로만 인정. 다만 봉사활동계획에 의해 동아리활동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였다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예) 방송반이 창체동아리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거나 자율동아리 활동계획에 의해 봉사활동을 하였다면 그것은 동아리활동이며 봉사실적으로 인정 불가. 다만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방송봉사활동 도우미로 활동하였다면 인정 가능

4.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사회복지관련 자원봉사수요처를 인증하는 VMS사이트(http://www.vms.or.kr)를 통해서 검색이 되는 기관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승인된 기관임 --> 로그인하지 않아도 기관 검색이 가능

5. 민간기관 · 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다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는 허용 가능
  (학교,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 후 인정 여부 결정)

※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7. 기부 관련 봉사활동

- (물품 및 현금기부) 단순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불가

- (물품 등의 제작기부)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봉사시간 인정

※ 단,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신청한 **개인계획에 의한 제작기부 봉사활동**의 경우 아래 8번(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봉사시간 인정

8.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 신청한 개인봉사활동의 경우만 적용**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①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제출
② 봉사활동 과정 사진(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③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 확인

※ 계획서 확인 시 학생 안전 및 무보수·자발·공익·비영리·비정파·비종파성 충족 유무 확인 후 승인

9.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실천(실행)으로 이어진** 사전교육,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꼭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된 경우만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필요 시 원격 실시 가능)

※ 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봉사활동 계획 변경 후 실시한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의 경우, 실제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교육이더라도 봉사시간 인정 가능

10. 문화 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11.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는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함

12.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의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13.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 '선플달기' 작성 최대 1시간 봉사활동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4. 헌혈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연간 3회 이내)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1일 8시간 이내 원칙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사후) 학부모 동의서** 또는 **학생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헌혈 봉사 활동 동기, 목적 등 소감 기록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음

15. 학교에서의 일상 활동

- 교실 및 특별실 청소, 환경미화 등 일상적 학교활동은 인정 불가
- 단, 학교장이 학년 초 봉사활동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16.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기안 및 결재)해야 함

17. 현장체험학습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인정

18. 졸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봉사활동

- 졸업식 후부터 상급학교 입학 사이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19.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1·2학년의 봉사활동

- 1·2학년은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1·2학년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0.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단 동일 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21.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및 관련 사전교육
- 결석생의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로 발급된 확인서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22.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단,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한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승인 조치함

참고자료 3 봉사활동 각종 서식

[서식1] 본교 활용 서식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단체봉사 구분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 학교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　　)								
인적 사항	미원초등학교　학년　반　성명 : ○○○ 외　명(총　명)								
봉사활동 기간	2021년　월　일부터　2021년　월　일까지								
봉사활동 기관	미원초등학교				**기관 연락처**		031)584-7708		
봉사영역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								
활동 장소	미원초등학교								
활동 내용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20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 ○　성명　(인)** **확인기관명 : 미원초등학교장 (직인)**									

[서식2]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협의록 양식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협의록 (양식)

<table>
<tr><td>회의 일시</td><td>2021. 3. ○○. 00:00</td><td rowspan="3">회 의
참석자</td><td rowspan="3">위 원 장 : 교감 (인)
부위원장 : 부장 (인)
위원 : (인) (인)
(인) (인)
(인) (인)</td></tr>
<tr><td>회의 장소</td><td>회의실</td></tr>
<tr><td>회의 안건</td><td>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심의</td></tr>
<tr><td colspan="4">기록 : (인)</td></tr>
<tr><td colspan="4">회 의 내 용</td></tr>
<tr><td>회의 내용</td><td colspan="3"></td></tr>
<tr><td>의결 내용</td><td colspan="3"></td></tr>
</table>

부 록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참고사항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운 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 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1365.go.kr	http://www.vms.or.kr	http://dovol.youth.go.kr
경기도 내 센터 구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 센터 없음)
봉사활동 주영역	공공, 공익 관련	사회복지 관련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대상 (작은도서관, 박물관 등)
확인서 명칭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확인서에 표현된 봉사주관기관명	봉사실적등록기관	관리센터[수요처]	현재는 없음. 수정 요청 중

※ **청소년활동진흥센터(DOVOL)는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에 흡수**
→ 'e-청소년' 사이트 접속하면 '자원봉사 DOVOL **'과 연계됨**
(e-청소년 : 전국 2,300여개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

◎ 봉사활동 실적의 나이스 연계 시 봉사활동 주관기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연계하면 주관기관명은 모두'~센터'로 입력됨
- 개인이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면 기관장명으로 출력되고(예 : ~협회장), 봉사기관이나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출력해 주면 기관명으로 출력됨(예 : ~협회)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는 봉사활동에 대해 인증만 할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 기관으로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별도의 봉사기관이 있다면 봉사활동주관기관명에 '○○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아니라 해당 봉사기관명이 입력되어야 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기관 교육 시 봉사활동 내용 및 기관명 입력에 대한 정확한 전달 필요

※ 현재 DOVOL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기관명(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으로 발급되고 봉사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확인서 양식이 다름. 그에 대해 교사, 교육청 담당자, 실적연계사이트 담당자가 숙지하고 민원 발생 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함

◎ 경기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 유관 기관

- 1365자원봉사포털(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256-1365
- VMS(경기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대표번호 031-213-8551
- DOVOL(경기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

◎ 1365자원봉사포털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연락처

순	지 역 센 터 명	전 화 번 호
1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031) 253-1365
2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031) 757-6226~8
3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031) 906-1365
4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032) 625-6501
5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031) 335-7757
6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031) 411-1365
7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031) 8045-2487
8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595-1365
9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031) 850-5745~7
10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031) 8024-2671~8
11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031) 312-7792
12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031) 8059-5680~2
13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02) 2687-1365
14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941-8212
15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031) 394-1365, 390-0217
16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798-1365, 768-1365
17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031) 998-1365
18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633-1365
19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031) 565-1365
20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843-1365
21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031) 674-1365
22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538-2417~9
23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031) 372-1365
24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031) 790-6820
25	의왕시 자원봉사센터	031) 454-1365
26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885-1365
27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857-9961
28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031) 774-6800
29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02) 502(503)-2238
30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031) 581-1365**
31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031) 834-1365

◎VMS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연락처

연번	지 역	전 화 번 호
1	고양지역관리본부	031-922-5784
2	광명지역관리본부	02-2687-1091
3	광주지역관리본부	031-798-8808
4	김포지역관리본부	031-996-0094
5	**남양주지역관리본부**	**031-563-0365**
6	동두천지역관리본부	031-864-4769
7	부천지역관리본부	032-662-7713
8	성남지역관리본부	031-756-3579
9	수원지역관리본부	031-253-2310
10	시흥지역관리본부	031-404-4347
11	안산지역관리본부	031-401-6472
12	안성지역관리본부	031-675-7676
13	안양지역관리본부	031-446-4065
14	양주지역관리본부	031-857-7973
15	양평지역관리본부	031-775-5995
16	여주지역관리본부	031-883-3304
17	오산지역관리본부	031-374-4569
18	용인지역관리본부	031-286-7918
19	의정부지역관리본부	031-852-4540
20	이천지역관리본부	031-638-4427
21	파주지역관리본부	031-941-6340
22	평택지역관리본부	031-653-5020
23	포천지역관리본부	031-531-0268
24	하남지역관리본부	031-795-4686
25	화성지역관리본부	031-366-4023